

# 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 영역제한 풀다

## 국토부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공사 시공자격 제한 해제 민간공사 2022년부터 적용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시공자격을 제한해 왔던 ‘업역규제’ 칸막이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전문건설업체는 2021년 시행되는 공공

공사부터 시공자격에 대한 제한이 해제된다. 민간공사의 경우 2022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영세전문건설사 보호 차원으로 10억원 미만 공사 하도급은 입찰기회가 전문건설사에 한정된다. 또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가 수주할 수 있다.

종합·전문건설사의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우선 상대업종의 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그간의 관련 실적이 필요하지만, 지금껏 상대시장의 관련 실적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5년간 기존 업종에

서 취득한 실적을 상대시장에서도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만들었다. 이는 종합의 경우 전체 실적의 3분의 2, 전문은 실적 전부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강원지역 건설업계는 상상 취지가 담긴 업역규제 폐지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신규개발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 진출 확대에 따른 과당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용석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 회장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생을 토대로 이뤄진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업계의 점진적인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문건설사는 대형공사 수주로 기술능력과 실적을 확대하고 사세를 키우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업종 간 시장 진출이 원활해져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상생의 취지가 담겨 있는 법안”이라며 “다만 업황 부족으로 업체 간 출혈경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고 균형적인 수주시장을 조성할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윤종현기자 jjong@

# 종합·전문건설업 업역규제 폐지, 도내 업계 기대·우려 교차

국토부 기본법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부터 시행 원·하도급 진출 가능  
내부경쟁 심화-경쟁력 강화 계기

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간  
막이가 허물어지면서 상호 시장 진출  
이 본격화되자 강원지역 종합·전문건  
설업계의 이해가 엇갈렸다. 10일 국토  
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  
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공공공사에

서 2개 이상 전문건설업체가 해당 전문  
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업체도 해당 전문공  
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다. 민간공사  
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2022년부터  
적용된다.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  
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  
자격요건을 만들면서 전문건설사가 종  
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도 갖춘다. 종  
합·전문건설사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때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  
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

기준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금직불제 적용기관과  
대상 사업도 확대된다. 임금직불제를  
적용받는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  
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 사업도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원 이  
상으로 넓힌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업  
체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  
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  
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  
사는 오는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  
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에 대해 지역 종합건설업계는 내

부 경쟁 심화에 대해 우려했으나 전문  
건설업계는 업계 경쟁력 강화의 계기  
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인철대  
한건설협회 도회장은 “발주규모는 그  
대로인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가 늘어나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  
이다”며 “여러 전문업체가 공동으로 참  
여할 경우 내부 의견 갈등이나 공사 후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  
등 발주처가 피해를 볼 수 있어 우려된  
다”고 밝혔다.  
반면 박용석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  
장은 “전문건설은 하도급 업체라는 고  
정관념에서 벗어나 원도급 시장에 진  
출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며 “이번 업  
역규제 폐지는 강원지역 전문업계가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권소담